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19가단129484 판결 [진정명의회복을 위한
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,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제1 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2012. 6. 11.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제2 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0. 10. 28. 사망하였는데,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었다.

나.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과 전북 완주군 D 답 1828㎡, E 답 1914㎡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10. 28.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. 1. 12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1. 12.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,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10. 28.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. 1. 12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또한 위 전북 완주군 D 답 1828㎡와 E 답 1872㎡에 관하여 2010. 10. 28.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. 1. 12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, 2012. 5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. 6. 8.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, 13,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 요지

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1/2씩 분할하기로

협의하였고, 다만 원고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원고와 피고는

대내적으로 상속재산을 1/2씩 보유하되 원고의 지분에 관한 등기만 피고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.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속재산 중 원고 소유의 1/2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원고 소유의 1/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구체적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부채가 있어 스스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, 그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, ②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,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내적인 소유자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 요지

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, 피고가 2012. 6.경 피고 명의로 된 전북 완주군 D 답 1828㎡와 E 답 1872㎡을 처분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등기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,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

상속재산의 1/2을 나누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메일 송부일인 2012. 6. 11.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구체적 판단

피고가 2012. 6. 11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/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. 6. 11.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 “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니가 사정이 안되니 내가 상속하고 만약 처분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눈다고 했는데 내가 뭘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”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, 위 이메일은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원고 때문에 돈 들어간 거 원칙대로 따지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이메일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/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 요지

피고가 2012. 6. 11. 원고에게 송부한 이메일(갑 제8호증)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상속재산의 1/2 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동일 행정구역 내 같은 조건의 토지 및 주택 실거래가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/2 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면 146,445,570원인데, 피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그 중 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2) 구체적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상속재산의 1/2 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메일(갑 제8호증)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/2 지분을 이전해주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1/2 지분 상당의 가액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약정이 있었다고

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,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반정모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전북 완주군 대 353㎡
2. 전북 완주군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, 스테이트지붕 주택(1층 83.03㎡, 1층 33.12㎡)
3. 전북 완주군 달 1142㎡ 중 1142분의 1026. 끝.

